

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57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11.

제출자 : 김기자 의원

1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, 자동차 표지 발급
(안 제3조 ~ 안 제4조)
-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주차안내 표지설치, 위반차량 조치
(안 제5조 ~ 안 제6조)

3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접수사항 없음

4. 기타 참고사항 : 따로 불임

- 붙임 : 가.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안
나. 신구문대비표
다. 기타 참고사항(관계법령)

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·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임산부”란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중이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.

2. “임산부 전용 주차구역”(이하 “전용주차구역”이라 한다)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.

3. “임산부전용차량”(이하 “전용차량”이라 한다)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(이하 “자동차표지”라 한다)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.

제3조(전용주차구역 설치) ① 충주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본 청, 직속기관, 사업소, 읍·면·동 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백화점(마트를 포함한다), 병원,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도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.

제4조(자동차표지 발급 등)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된다.

③ 임산부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았을 때에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된다.

제5조(주차안내 표지설치) 전용주차구역에는 임산부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부

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.

제6조(위반차량 조치)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 표지 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나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령

□ 장애인 · 노인 ·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

제6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